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814호, 2022. 2. 3. 공포, 2022. 2. 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령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령 일부조항을 개정

- 1) 제26조의2제1항제9호 및 별표 2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9호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0조의4”를 “법 제10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 ① ----- ----- ----- ----- -----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 급시설 설치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조의2제1항----- ----- --
10. ~ 14. (생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 마. (생 략)	1. 일반기준 가. ~ 마. (생 략)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위반행위
가. 승계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 제7조제1항부 터 제3항에 ----- -----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 제10조의4제1항에 --- ----- -----
다. ~ 차. (생 략)	다. ~ 차. (현행과 같음)
카. 시공자가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카. ----- 제11조제4항 후단에 ----- -----
타.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1 조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경우	타. ----- 제11조2 제1항에 ----- ----- ----- -----
파. ~ 우. (생 략)	파. ~ 우.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3 - 5137